

● 제32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19)

2024. 0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819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4. 05. 27.
- 다. 회부일 : 2024. 05. 30.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조 6,83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억원(1.4%)이 감액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319,684	6,683,895	6,779,894	△95,999 (△1.4)	
일반회계	4,390,749	4,883,715	4,854,179	29,536 (0.6)	
세외수입	경상적	12,604	11,747	11,921	△174 (△1.5)
	임시적	71,679	71,242	71,229	13 0.0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5	5	5	-
지방교부세	785	-	-	-	
국고보조금 등	4,291,932	4,791,398	4,759,099	32,299 (0.7)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744	9,324	11,925	△2,601 (△21.8)	
균형발전특별회계	-	10,552	10,552	-	
국고보조금 등	-	10,552	10,552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28,935	1,789,628	1,915,163	△125,535 (△6.6)	
세외수입	경상적	1,918	1,587	1,587	-
	임시적	2,871	2,376	2,376	-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376	640	640	-
국고보조금 등	952,726	789,576	952,715	△163,139 (△1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1,044	995,450	957,846	37,604 (3.9)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조 4,97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51억원(1.9%)이 감소하였음.

〈표〉 복지정책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0,001,964	10,497,846	10,702,935	△205,089(△1.9)
행정운영경비	622	661	653	8(1.2)
재무활동	1,036,540	858,698	1,014,575	△155,877(△15.4)
사업비	8,964,801	9,638,487	9,687,707	△49,220(△0.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증가한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서울시의 금번 1차 추경안은 ① 민생경제·동행 (3,682억 원) ② 안전 분야 투자 (1,137억 원) ③ 매력 분야 투자(773억 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음.
- 복지정책실은 총 38개 사업의 증액 편성(879억 원), 9개 사업 감액 편성(2,930억 원)을 단행해 전체적으로는 2,051억 원을 감추경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증액편성 사업은 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10개 사업, 494억 원 증액), ② 대상별 맞춤형 돌봄 및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11개 사업, 234억 원 증액), ③ 복지시설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및 복지 인프라 구축(11개 사업, 78억 원 증액) 으로 나타남.
 - 감액편성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추경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임.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조 6,838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9억 9천9백만원(1.4%)이 감소하였음.

〈표〉 복지정책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319,684	6,683,895	6,779,894	△95,999 (△1.4)	
일반회계	4,390,749	4,883,715	4,854,179	29,536 (0.6)	
세외수입	경상적	12,604	11,747	11,921	△174 (△1.5)
	임시적	71,679	71,242	71,229	13 0.0
	지방행정재제 부과금	5	5	5	-
지방교부세	785	-	-	-	
국고보조금 등	4,291,932	4,791,398	4,759,099	32,299 (0.7)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744	9,324	11,925	△2,601 (△21.8)	
균형발전특별회계	-	10,552	10,552	-	
국고보조금 등	-	10,552	10,552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28,935	1,789,628	1,915,163	△125,535 (△6.6)	
세외수입	경상적	1,918	1,587	1,587	-
	임시적	2,871	2,376	2,376	-
	지방행정재제 부과금	376	640	640	-
국고보조금 등	952,726	789,576	952,715	△163,139 (△1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1,044	995,450	957,846	37,604 (3.9)	

- 주된 감액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의 감액(1,631억 3천9백만원)과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감액(26억 1백만원)에 있음.

나.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조 4,978억 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50억 8천9백만원(1.9%) 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0,001,964	10,497,846	10,702,935	△205,089(△1.9)
행정운영경비	622	661	653	8(1.2)
재무활동	1,036,540	858,698	1,014,575	△155,877(△15.4)
사업비	8,964,801	9,638,487	9,687,707	△49,220(△0.5)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에서는 7개 과 가운데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6개 과에서 추경예산안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추경 편성액 순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자립지원과 14건 (314억 5천4백만원), 자활지원과 7건 (263억 7천2백만원), 어르신복지과 11건 (105억 8천4백만원), 장애인복지정책과 3건 (94억 7천2백만원), 안심돌봄복지과 3건(30억 5천8백만원), 안심소득추진과 1건(15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 복지정책과에서는 총 8건의 사업에서 2,875억 2천9백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제1회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10,702,935	△205,089	10,497,846	△1.9	47
복지정책과	4,586,342	△287,529	4,298,813	△6.3	8
안심소득추진과	21,321	1,500	22,821	7.0	1
안심돌봄복지과	308,907	3,058	311,965	1.0	3
어르신복지과	3,999,168	10,584	4,009,752	0.3	11
장애인복지정책과	241,690	9,472	251,162	3.9	3
장애인자립지원과	1,258,651	31,454	1,290,106	2.5	14
자활지원과	286,855	26,372	313,226	9.2	7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일반회계 796억과 특별회계 1,255억의 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증 879억, 감 2,930억). 분야별 세부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10건, 494억 3천3백만원), ② 대상별 맞춤형 돌봄 및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12건, 233억 8천만원), ③ 복지시설 이용 시민 안전 확보 및 복지 인프라 구축(11건, 77억 6천2백만원), ④ 국고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한 감추경 (9건, 2,930억) 등으로 구성됨.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복지정책과(8건)		2,942,969	-287,529	2,655,440	
1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924	-47	878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2	일상돌봄서비스사 업	868	-117	751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791	138	929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 대체인력 23명→27명으로 지원확대
4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72,383	-210	72,173	○ 서울시복지타운 사용료 감액
5	기본경비	293	8	302	○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비 추가편성
6	국고보조금 반환	0	1,371	1,371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7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전출금	952,715	-163,139	789,576	○ 의료급여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전출금 감액
8	의료급여사업	1,914,996	-125,535	1,789,461	○ '23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 변동 세출 및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안심소득추진과 (1건)		15,000	1,500	16,500	
9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15,000	1,500	16,500	○ 기존 중위소득 인상률 현행화 (6.72%) 및 산출 기준액 변경 ('23.12월 급여) 등에 따른 증액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안심돌봄복지과 (3건)		41,872	3,058	44,930	
10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107	1,968	4,0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타당성 검토 통과 후 '24년 예산 미반영 사업 6건 지원 (418백만원)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 포함 전층 리모델링 실시 설계에 따른 사업 규모 증가 등 공사비 추가 소요액 증액 (921백만원) ○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인허가 및 설계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충족 등 공사 범위 추가로 인한 공사비 소요액 증액(629백만원)
11	긴급복지지원사업	39,765	995	40,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 기본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 등 지원금액 인상 (4인가구 기준 162만→183만원)
12	국고보조금 반환	0	96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어르신복지과 (11건)		158,025	10,584	168,609	
13	어르신의료복지시 설 운영(요양)	8167	11	8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개원 시립노인요양시설 2개소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 강동 8백만원, 은평 3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14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743	2642	4385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건 및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유 ○ 시립노인요양시설 긴급 기능보강 추진 - 긴급개보수 3건
15	노인지원주택 운영	393	190	583	○ 서비스 중단 어려움에 따른 노인지원주택 하반기 사업규모 축소하여 운영비 지원
16	노인맞춤돌봄서비 스	56579	-912	55668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17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31316	1818	33134	○ 시립장사시설 화장공급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동력비 편성 - 인건비 30명 및 동력비
18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5768	102	5869	○ 노인복지관 안전 관련 기능보강 7건 - 구립 2건, 시립 5건
19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8933	648	39581	○ 민간무료급식 이용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공공급식 1,000명 지원 - 서울노인복지센터 800명, 지역 복지관 200명
20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2076	1415	13491	○ 경로당 중식 주5일 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 - 주3일 →주5일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550	379	2929	○ 경로당 중식 주5일 제공을 위한 양곡비 지원 - (주3일현행) 연8포대 →(주5일확대) 연12포대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조정
22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0	3837	3837	○ 경로당 중식 주5일 제공을 위한 중식도우미 일자리 추가지원 - 활동비 월290천원 등 ○ 시니어일자리 박람회 개최 ○ 서울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확대 개편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23	국고보조금 반환	500	455	955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장애인복지정책과 (3건)		27,412	9,472	36,884	
24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141	-21	120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25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2,991	72	3,063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6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24,280	9,421	33,701	○ 장애인 버스요금 월별 이용률 증가 추세 반영하여 증액 - `24.1~4월(4개월) 11,125백만원 집행, 연간 33,701백만원 집행 예상
장애인자립지원과 (14건)		970,857	31,454	1,002,311	
27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289	835	1,124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 수행기관 신규 모집
28	장애아가족양육지원	8,047	1,694	9,740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29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4,853	398	5,251	○ 시립반다비체육센터 공사에 따른 곰두리체육센터 휴관 예정으로, 수입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398백만원) 보전
30	장애인복지관 운영	86,654	200	86,854	○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1개소 추가설치
31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8,438	72	8,510	○ `23년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종사자 인건비 대비 2.5%(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시 증액 필요
3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6,025	117	6,142	○ 낮병동 보조지원 기준에 따라 `24년 낮병동 추가지원예산 미반영분 확보 - 운영비 1명당 3.9백만원, 총 30명 지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3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618,378	10,552	628,930	○ 예산 집행추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 급여	12,910	4,673	17,583	○ 예산 집행추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5	장애수당-기초	31,998	-1,069	30,929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6	중증장애인연금	162,438	4,459	166,897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7	장애인의료비 지원	4,653	1,058	5,711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4,593	3,765	28,358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39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기능보강	1,395	206	1,601	○ 국고보조금 증액 사업에 대한 매칭시비 증액 - 법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개소 추가
40	국고보조금 반환	187	4,494	4,681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자활지원과 (7건)		238,366	26,372	264,738	
41	거리노숙인 보호	11,153	68	11,221	○ 폭염 대비 노숙인 보호대책 강화 - 여성 노숙인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등(34백만원) - 노숙인 거리상담 활동을 위한 구호물품 및 현장근무자 피복 지원 (34백만원)
42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927	218	3,145	○ 특급호텔 2개소 추가 리노베이션에 따른 후원물품 운송비 및 임시창고 운영예산 확보 - 후원물품 운송비(182백만원), 임시창고 임차 운영비 (36백만원)
4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10,189	368	10,556	○ 쪽방촌 소방시설 강화를 위한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추가 설치(233백만원) ○ 쪽방주민 구강관리센터 1개소 추가 운영을 위한 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 등 (135백만원)
44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1,446	446	11,892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인원 인건비 및 인건비 상승률 등 고려
45	자활근로사업 지원	119,158	26,334	145,491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업량 증가(증 1,318명) (13,163명→14,481명)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4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83,494	-1,907	81,587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 사업량 감소(감 430명) (32,413명→31,983명)
47	국고보조금 반환	0	846	846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390>

-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소득 양극화 완화 및 부의 재분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의 모델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 모형으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액의 50%를 보장해주는 사업임.

※ 안심소득 시범사업 주요 추진 경과

-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21. 7. 1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1. 7. 1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1. 10.15.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1. 10.
-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 : '22.3 ~ 6월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 : '22. 7. 4.

- 안심소득의 지급은 '23년까지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24년부터 서울시 안심소득추진과에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가 이관된 바 있음.

- 해당 예산은 '24년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안심소득 지원집단 급여의 증가로 급여 지급액 부족예상분인 1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표〉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6,500,000	15,000,000	1,500,000

- '24년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안심소득의 지급계획은 총 2,084가구 대상 202억 8천 5백만원으로 상세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2024년 안심소득 지원 세부 추진계획

구분	지급기간	선정기준	선정가구수	예산액
1단계	'22.7월 ~ '25.6월, 3년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15,000,000천원
2단계	'23.7월 ~ '25.6월, 2년	중위소득 50-85% 중위소득 50% 이하	600가구 500가구	
3단계	'24.4월 ~ '25.3월, 1년	중위소득 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150가구) 저소득위기가구(350가구)	500가구(예정)	5,284,650천원

- 안심소득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¹⁾에 의해 규정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됨. '24년 중위소득은 2023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인상액이 발표된 바 있음.²⁾

〈표〉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 중앙정부 기준 총 73개의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추진하게 되며,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내년도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계획을 수립하게 됨.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역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차년도 사업 설계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 집행기관에서는 당시 업무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어 예산편성 역시 집행기관이 아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도하고 있었고, 업무 이관이 결정된 '23년 10월은 예산 확정단계였으므로 중위소득의 인상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7.28.).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인상"

- 실제로 예산심의과정시 해당부서에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23년도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추계한 것으로 나타남.

※ 안심소득추진과 '24년 예산편성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자료

- ▶ '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반영 및 1·2단계 지원가구(1,584가구) 1년간 예산을 편성하여, '23년 대비 지급 예산이 30% 증액됨

(단위 : 가구)

예산 산출 기준 급여 수준(A)		가구수 (B)	월단위 급여 예산 (C=A*B)	연간 급여 예산 (D=C*12)	2024년 급여 예산 (D*105.5%)
1단계 참가구 2023년 급여액(6개월 평균)	1,022,144	484	494,717,696	5,936,612,352	6,263,126,000
2단계 참가구 2023년 급여액(7월 첫 지급)	619,845	1,100	681,829,500	8,181,954,000	8,631,961,000
합 계			1,176,547,196	14,118,566,352	14,895,087,000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가구(1+2단계) 2024년 급여 예산 산출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5.47% 인상) 반영 ⇒ 150억원 산출

- 해당 보고자료에서는 '23년도 중위소득 인상률을 5.47%로 반영한 것이 확인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4년 중위소득 인상률은 6.09%로 집행기관의 작성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예산편성 추계단계에서부터 중위소득 인상률이 잘못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식제공 확대 <사업별설명서 p.432,437,441>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중식제공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서울시 소재 경로당에 양곡비, 부식비, 중식도우미를 추가 지원하고자 4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식제공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부식비)	13,490,642	12,075,914	1,414,728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양곡비)	922,794	609,822	312,972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중식도우미)	2,976,000	0	2,976,000

- 경로당은 동네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노인정'에서 시작되어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중 노인 여가시설로 분류하였음.
-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설치 운영 중인 경로당은 총 3,535 개소이며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서울시 소재 경로당의 66%는 공동주택 형태이며 사립경로당이 대부분임.

〈표〉 서울시 경로당 주요 운영현황

단위: 개소('23.12월 기준)

경로당수 비율	설립주체		운 영 형 태			면 적(m ²)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
3,535	1,045	2,490	938	2,293	301	12	522	1,256	1,632	113
비율(%)	29%	71%	25%	66%	9%	0%	15%	35%	47%	3%

- 또한, 경로당 이용회원은 약 128,126명으로 동 주민센터당 평균 8.3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서울시 노인인구(1,733,580명) 대비 경로당 이용노인의 비율은 약 7.4% 정도로 나타남.
-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조사³⁾에 따르면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친목도모(82.9%)'와 '식사서비스(62.5%)'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9%),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11%)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024.5.1.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자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전국 경로당(6.8만개)이용 어르신이 주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표〉 경로당 식사 확대 추진방안⁴⁾

<p>① 1단계('24~) :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2.8만개)의 식사 제공 횟수 확대 * 노인일자리 5.6만명 → 7.8만명('24.3~)</p> <p>② 2단계('24~) : 조리시설 미설치 경로당(4만개)에 대한 시설·설비 확충방안 마련</p> <p>③ 3단계('25~) : 식사 제공 경로당 지속 확대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 추진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 後)</p>

3) 서울복지재단, 「서울 경로당 기능강화 방안연구」, 2021년

4)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2024.3.21.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은 3,489개소로 이중 어르신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총 3,115개소로 이중 5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은 826개소, 5회 미만 제공은 2,289개소, 나머지 374개소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 3회 식사 빈도가 높은 주요 이유로는 ① 부식비 재원 ② 중식도우미 지원(주 2~3회 방문) 등으로 나타남.

경로당 중식 현황 (회/주)	합계	5회	4회	3회	2회	1회	0회
경로당 수(개)	3,115	826	105	1,320	679	185	374

※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

- 집행기관에서는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에 따른 부식비, 양곡비, 중식도우미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7억원을 편성하려는 것이며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3일 기정예산(시비 111억)	주 5일 중식 추경(시비 47억)	최종(시비158억)
양곡비 (20Kg)	연 8포 지원 610백만원	연 12포 지원 313백만원	923백만원
부식비	경로당별 175천원 4,255백만원	경로당별(175천원)×1.7배 1,415백만원	5,670백만원
중식 도우미	구별 200명 (월 10회, 3시간) 6,279백만원	구별 200명 ×1.7배 2,976백만원	9,255백만원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경로당 부식비(1,415,728천원)② 양곡비(312,972천원) ③ 중식 도우미 활동비(2,976,000천원)임.
- 이중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지원 없이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4년 기준 경로당 1개소당 35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며, 자치구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의거하여 차등 지원되고 있음.

〈표〉 서울시 경로당 운영지원 내용

구분 연도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2024년	월35만원×12개월	월165천원×2개월 (7~8월)	월40만원×5개월 (1~3월,11~12월)	53,200원×연 8포대
2023년	월35만원×12개월	월165천원×2개월 (7~8월)	월37만원×5개월 (1~3월,11~12월)	53,170원×연 8포대
2022년	월30만원×12개월	월100천원×2개월 (7~8월)	월32만원×5개월 (1~3월,11~12월)	55,340원×연 7포대
재원비율	시비:구비 (※국비지원 없음)	국비:시비:구비 (20:40:40)		

-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부족하고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중식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자치구마다 상이하며 경로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되거나 면적이나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도 함.
- 2021년 서울복지재단에서 '경로당 기능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로당의 핵심 기능으로 노인에게 휴식처와 친목 도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방'이며, 중식 제공 또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주5일 중식제공 확대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단, 경로당마다 등록인원과 중식 인원이 차이가 있고 중식도우미 지원 제도 또한 자치구·경로당마다 차이가 있어 이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하는 중식 인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임.

다.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업별설명서 p.410>

- 지원주택이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 내 독립적·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을 말함.

<표> 노인지원 주택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12.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
 - 서울시 주민등록 무주택 1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24년 기준은 SH공사 공고를 따름)
 - 독립적 주거를 희망하나 일상생활 제약으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단, 독립 주거가 어려운 정도의 증상(중증 치매 또는 상시 의료서비스 필요 등)인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수행주체 : 서비스제공기관
- 추진방법 : 입주자 선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입주자에게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 '24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3억 9,318만원으로, 추경안은 인건비, 사업비 등 1억 8,99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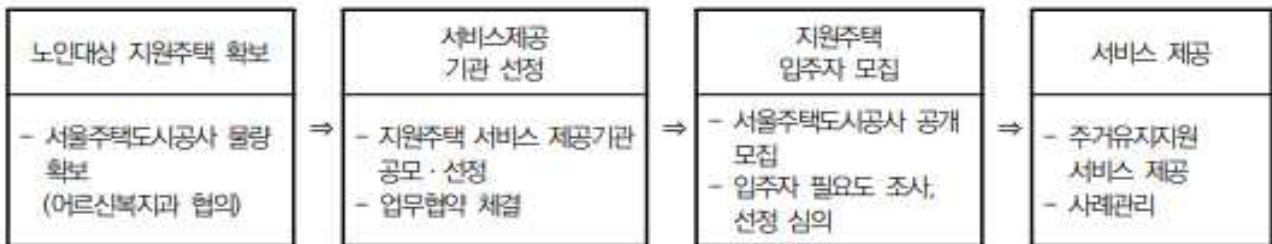
〈표〉 노인지원주택 운영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83,104	393,186	189,918
사회복지사업보조	583,104	393,186	189,918

- 서울시는 2020년 노인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91호(입주공간 86호, 커뮤니티룸 5호)를 공급·운영중이며 주거취약 어르신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어르신의 안정적 거주 지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 사례관리, 지역 내 자원개발 및 연계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육체적·정신적인 기능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활동적인 노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의 지속적인 거주가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노인지원주택 사업 추진 절차



-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는 (사)나눔복지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있음.

〈표〉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주택 소재지	공급호수(호)
계		91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동대문구, 강동구	48
사단법인 나눔복지	양천구, 금천구	43

- 노인지원주택은 공급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상이하며 주택이 제공된 자치구는 양천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동구임.

〈표〉 노인지원 주택 현황

- 공급규모 : 총91호(입주공간 86호, 커뮤니티룸 5호)

구역	주택 소재지	동	호(실)	보증금 및 월 임차료(평균)
양천· 금천 43호	양천구 <u>목동중앙서로</u>	2(A동, B동)	28	~보증금·300만원, ~38만원
	금천구 <u>독산로</u>	2(가동, 나동)	7	~보증금·300만원, ~35만원
	금천구 <u>탑골로</u>	2(A동, B동)	8	~보증금·300만원, ~25만원
동대문· 강동 48호	동대문구 <u>답십리로</u>	1	15	~보증금·300만원, ~42만원
	동대문구 <u>한천로</u>	1	16	~보증금·300만원, ~29만원
	강동구 <u>명일로</u>	1	17	~보증금·300만원, ~35만원

※ 커뮤니티공간(서비스제공기관 입주): 양천·금천(독산로), 강동 각1호, 동대문(답십리로, 한천로)2호

- 2021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⁵⁾에 의하면 노인지원주택의 공실 발생의 주된 요인은 어르신이 원하는 희망거주지역과 노인지원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불일치, 노인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 월세 등의 주거비 부담,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범위 모호 등이라 할 수 있음.

5) 서울복지재단 2021-32, 「노인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 2021년

- 최근 3년간 노인지원주택의 입주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91호중 2021년 56명, 2022년 66명, 2023년 78명이 입주하였고 커뮤니티룸 5호를 제외한 86호중 '23년 말 기준 8호가 공실인 상태임.
- 2023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노인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 및 서비스 지원내역, 소수입주자에 대한 혜택 등 타 재가서비스에 비해 고비용 저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 이러한 지적사항 등으로 노인지원주택의 '24년 당초예산⁶⁾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 종결을 전제로 6개월 운영비만 편성되었음.
 -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2024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변경계획(어르신복지과-13151, 2024.5.20.)을 수립하여 사업종결에 따른 입주자 돌봄 공백 및 운영기관 종사자 고용 등의 문제로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감축 및 커뮤니티룸 축소 운영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입주자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표〉 노인지원주택 주요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연장) 입주형 <u>생활지원서비스 유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기간 2024.1.1.~ 2024.6.30. → (변경) 2024.1.1.~ <u>2024.12.31.</u> ○ (운영방식 개선)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감축, 커뮤니티룸 축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종사자 <u>13명</u>, 커뮤니티룸 <u>5개소</u> → (변경) 종사자 <u>6명</u>, 커뮤니티룸 <u>4개소</u> ○ (재입주 관리강화) 재계약 대상자 서비스 필요도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소득, 자산기준 위주 심사 → (변경) 서비스제공기관
--

- 그러나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금번 추경안에 편성한 것이

6) 노인지원주택 예산안 편성액 : 793백만원→조정액 :393백만원으로 4억원 삭감.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인지 여부, 경비의 복원 또는 증액의 긴급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